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73,108,547	20,193,256
일반회계	636,264,423	19,087,933
특별회계	36,844,124	1,105,324
공기업특별회계	8,929,940	267,898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8,929,940	267,898
기타특별회계	27,914,184	837,426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491,673	44,750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484,296	44,52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07,602	30,228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917,906	27,537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8,711,302	261,339
수질개선 특별회계	7,700,784	231,024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6,600,621	198,019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217,401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5,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간주처리(예산계상 및 이월조치) 할 수 있다.